

2017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우선지원 선정기준 [제조업]

선정항목	배점	비고
● 공통 적용 항목: ①~⑧번	9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온라인 신청 시 필수 첨부파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, 위험성평가표 및 실시규정(계획서) <p>* 위의 3가지 파일이 모두 첨부된 온라인 신청 건만 접수되며 미 첨부된 파일이 있을 경우 반려됨.</p>
● 지역 자율 항목: ⑨번	10점	
①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 또는 공단 기술지도 사업장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17년도 고용노동부 감독·점검자료 파일 첨부 시 배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정지시서, 고용노동부 과태료 납부고지서 사본 중 택일 ○ 2017년도 안전보건공단 기술지도 사업장에 배점
② 부산지역 재해다발 위험업종 (재해율 상위 10대 위험업종)	최대 2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리제조업 20점 2.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18점 3.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16점 4. 금속재료품 제조업 14점 5. 선박건조 및 수리업 12점 6. 펌프·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10점 7. 식료품제조업 8점 8. 기타제조업 6점 9. 기계기구 제조업 4점 10. 수제품 제조업 2점
③ 천장크레인(호이스트 제외), 지게차 보유사업장	최대 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천장크레인 또는 지게차 1대 당 2점씩 최대 10점 배점 ○ 아래 증빙파일 첨부 시 배점(기타 파일 배점 없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장크레인 : 안전인증서 사본, 안전검사 필증 스티커 사본, 안전검사서 사본 중 택일 <p>* 지원대상 선정 시 검사 유효기간 이내만 배점</p> <p>- 지게차 : 건설기계등록증, 매매계약서 사본 중 택일</p> <p>* 지게차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시 배점 없음.</p>
④ 취약계층 근로자 보유 사업장 (고령자, 산재장애인, 외국인)	최대 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취약계층 근로자 1명 당 2점씩 최대 10점 배점 ○ 아래 증빙파일 첨부 시 배점(기타 파일 배점 없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령자 : 고용·산재보험 명부(국민연금, 건강보험 해당없음), 2016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중 택일 <p>* 대상자 : 만 55세 이상 (1961년 출생자까지만 배점)</p> <p>- 산재장애인 : 근로복지공단 산재장애 등급 서류</p> <p>- 외국인 : 고용·산재보험 명부(국민연금, 건강보험 해당없음),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사본 중 택일</p> <p>* 고용·산재보험 명부는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'5' 또는 '6'으로 시작하는 경우만 배점</p>
⑤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	10점	-
⑥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	1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: 처음으로 클린지원 신청하는 사업장
⑦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또는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이수사업장	5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 : 2017년도에 해당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<p>* 2017년도 이전에 교육 이수한 경우 배점 없음.</p>
⑧ 고용노동부 인정 노사문화 등 우수기업 사업장	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여한 노사문화 우수 상장 등 증빙파일 첨부 시 배점 <p>*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확인서 첨부 시 배점 없음.</p>
⑨ 재해다발 사업장	최대 10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최근 5년간 재해건수 1건 당 2점씩 최대 10점 배점

※ 주의 사항

1. 신청 시 첨부한 증빙파일 내용에 거짓이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, 추후 클린지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.
2.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자수, 업종, 재해율 등은 신청시점의 공식통계 기준을 반영함.
3. 동점사업장은 위 항목 중 ⑥→②→⑤→④→⑧→①→③→⑦→⑨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함.
4. 위의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추후 공단 본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5. 클린지원 후 10년 경과한 사업장은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최초 지원사업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함.